

##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 제3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호주승계예정자”를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자”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1년 12월 31일까지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0조 제3항 후단중 “아니하다” 를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생략) &lt;신 설&gt;</p>	<p>제13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현행과 같음) ②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p>		
<p>제13조의2(1가구당 1대초과 자동차에 대한 세율적용 특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공포일 이후에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세는 1,000분의 20, 등록세는 1,000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p>	<p>&lt;삭 제&gt;</p>		
<p>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②(생략)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 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p>	<p>제14조(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 -----</p>		



현행	개정 (안)
<p>제2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②(생략)</p> <p>③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p> <p>제2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p> <p>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lt;신설&gt;</p>	<p>제28조의5(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충청북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p>

현행	개정 (안)
	<p>세와 등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p>